생산적 노화를 위한 복지정책 방향

최 성 재(서울대 · 노인복지론)

Ⅰ. 서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구혁명으로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난 1세기 동안 평균수명은 40여 년 가까이 증가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는 50년이나 증가하였다.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 증가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지닌 노인의 수와 비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선진국은 물론 우리 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노인 문제와 욕구에 사회적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되었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급기야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켜 복지국가의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노인문제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복지국가의 가장 큰 과제가 되어 왔다.

노인과 관련된 복지문제와 대상은 일차적으로 빈곤문제와 저소득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었으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빈곤의 문제는 많이 해결되어가고 있고 반면에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노인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 사회에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건강기대수명도 연장되고 있어 소위 무병 장수하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난 40여 년 간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도 정년은 55세에 고정시켜두고 퇴직 후 생활이나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나 국가가 거의 관심을 두지 못했다.

1999년 현재 55세에서의 평균여명은 남자 21년, 여자 27년, 60세에서의 평균여명은 남

자 18년, 여자 22년, 그리고 65세에서는 남자 14년, 여자 18년이나 되어 정년퇴직 이후의 여생은 실로 긴 기간으로 연장되고 있다. 정년 이후 무병 장수하는 생활이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심리적 측면에서 개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기간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년 이후 여생 동안의 삶의 질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보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년 이후의 삶의 질 문제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또는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의 문제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 간 있어서 '생산적 노화'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의 서비스에서의 중요한 개념과 서비스의 목표로 제기되어 왔다.

생산적 노화의 문제는 삶의 질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삶의 질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삶의 질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생산적 노화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 노화의 의미와 평균수명의 연장 및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을 살펴본 후 생산적 노화에 사회적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와 현재의 국가 정책과 문제점을 논하고 생산적 노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생산적 노화의 의미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라는 용어는 1990년 이전의 문헌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에 노화(aging) 및 노인과 관련하여 생산성(productivity)이라는 용어는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생산적 노화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또는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의 주요한 한 측면 내지는 한 부분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적 노화나 건강한 노화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생산적 노화는 '생산적'이라는 말과 '노화'라는 말이 결합된 것인데 노화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노인이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생산적'이라는 말은 '생산성이 있는'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생산적 노화는 노인이 하는 활동이 '생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생산성이라는 말의 의미와 적용범위가 문제가 된다.

노화와 생산성 또는 노인의 생산성에 관련해서 생산성은 많은 경우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활동에 한정해서 정의하거나 아니면 직업능력 수행능력에 한정해서 정의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생산적 노화라는 말이 새로이 사용되면서 많은 경우 그 의미가 경

제적 활동, 시장적 활동, 보수를 받고 하는 활동, 직업적 활동으로 제한되었다(Glass et al., 1995; Burr et al., 2002).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물질적 이득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생산적 노화의 의미를 제한한 것은 생산이라는 말 자체가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적 활동의 영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온 결과라 생각된다.

생산적 노화의 개념을 경제적 활동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개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산적 노화에 대한 개념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arrels(1994)는 생산적 노화는 [노인이 노화과정에서] 활동의 대가를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Glass 등(1995)은 생산적 노화에 관계되는 활동으로 유급의 일, 비정규 고용, 가정관리, 아동 및 부양가족 보호와 자원봉사활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Hooyman과 Kiyak(1999)은 생산성을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활동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훈련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적 노화는 노인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활동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과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Hooyman과 Kiyak(1999)은 생산적 노화활동으로 보수를 받는 활동과 보수를 받지 않는 활동으로 구분하고, 보수를 받는 활동은 고용활동으로 보고, 보수를 받지 않는 활동으로는 여가활동, 자원단체 참여 활동(membership in voluntary association), 자원봉사활동, 학습활동, 종교활동, 정치활동, 투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이들은 생산적 노화의 활동으로 경제적 활동과 사회단체 참여활동, 자원봉사활동, 정치활동에 여가활동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Hendricks(1995)도 생산성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관리기술,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획득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생산적 노화는 노인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생산관련 관리기술을 유지 또는 습득하거나,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몇몇 정의를 살펴보면 생산성은 물질적인 것의 생산은 물론 비물질적인 것의 생산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구체적 활동으로는 직업활동(전임 또는 시간제), 사회단체 참여활동, 정치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생산적 노화는 "노인이 노화과정에서 경제적 보상을 받는 피고용(employed) 및 자기고용(self-employed)에 참여하거나 경제적 보상이 없는 자원봉사 활동,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노인 자신과 가족 및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하겠다. 여기서 생산적이라는 것은 결국 노인이 물질적인 것 또는 비물질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것 그 자체보다도 어떤 활동을

통하여 활동을 하는 노인 자신, 가족 및 사회에 유익을 주어 기여하게 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위의 확대된 정의에서 포함시켰던 사회단체참여 활동도 자원활동이고 사회적 봉사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로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투표권 행사는 국민의 권리행사이고 정치적 활동도 시민참여활동의 일환이므로 자원봉사활동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생산적 노화라는 정의는 목적 지향적인 정의로 노인이 경제적 및 비경제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 가족 및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노인이 개인, 가족 및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제적 및 비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Ⅲ. 평균수명의 연장 추세

우리 나라 노인인구 수와 비율의 증가 속도가 세계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 것(<표 1> 참조)과 마찬가지로 평균수명 연장추세도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전개되어 왔다. 다음 <표 2>에서 보듯이 20세기 초 우리국민의 평균수명은 남녀 각각 23, 24세 정도 이었는데 해방 당시는 46세, 51세였고 2000년에는 72세, 80세로 되었다. 즉 100년 동안에 평균수명이 50세 이상 연장되었다.

<표 1> 주요국가의 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

	도달 년도			증가소요 연수	
	7%	14%	20%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20	115	41
독 일	1932	1972	2012	40	40
영 국	1929	1976	2021	47	45
이탈리아	1927	1988	2007	61	19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한 국	2000	2019	2026	19	7

자료 : UN. (각 년도),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0), 인구통계자료집

<표 1-11> 우리 나라 평균수명추이

연 도	평 균 수 명		
	전체	남	여
1905	-	22.6	24.4
1945	-	45.6	50.7
1950	-	48.3	53.9
1960	52.4	51.1	53.7
1971	62.3	59.0	66.1
1981	66.2	62.3	70.5
1991	71.7	67.7	75.9
2000	75.9	72.1	79.5
2010	78.8	75.5	82.2
2020	80.7	77.5	84.1
2030	81.5	78.4	84.8

자료 : 통계청 (2001), 장래 인구 추계.

위 <표 2>에서 말한 평균수명은 사실 출생시의 평균기대수명이고 출생하여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향후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가를 예상하는 기대여명이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현재 50세 이상 연령별 기대수명을 보면 20년 사이에 크게 연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보편적 정년인 55세에서의 평균 기대여명은 남자 21년, 여자 27년이고, 60세에서는 남자 18년, 여자 22년, 그리고 65세에서는 남자 14년, 여자 18년이다. 다시 말해서 55세에 퇴직한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1/3 이상을 평균적으로 더 살게 되고, 60세에 퇴직한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1/3을 더 살게 되며, 65세에 퇴직하여도 지금까지 인생의 1/4를 더 살게 되어 퇴직 후의 노령기는 실로 긴 기간이 되고 있다.

<표 3> 연령별 평균 기대여명(1999년 현재)

연령	남자			여자		
	1979	1989	1999	1979	1989	1999
50	19.71	22.61	25.28	26.78	28.73	31.25
55	16.27	18.88	21.26	22.69	24.36	26.67
60	13.12	15.35	17.51	18.73	20.14	22.21
65	10.36	12.18	14.06	15.05	16.15	17.96
70	8.02	9.36	10.96	11.69	12.49	14.02
75	5.99	7.01	8.32	8.67	9.32	10.57
80	4.53	5.13	6.18	6.11	6.68	7.73

자료 : 통계청 (2001), 1999년 생명표 작성 결과

Ⅳ. 노화와 활동능력

노화는 신체적 노화로 대표되는 경향이 있으나 노화과정은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면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적어도 3가지 측면의 노화를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화와 생산성에 대한 연구가 의외로 드물고(Glass et al., 1995) 노화에 대한 부정적 편견(negative stereo type과 ageism)에 의해 노화에 따른 생산성 약화가 크게 과장되어 이해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몇 가지 주요연구를 중심으로 노화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심리적 한 측면) 및 사회적 능력의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신체적 활동 능력

노화에 따른 활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소수 연구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한 연구의 결과로 노화에 따른 활동능력이 상당한 정도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Guralnik(1985)이 1920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힘든 가사 일, 큰 물건 이동, 10파운드 이상 물건 들어올리기 및 운반과 같은 활동은 65세 이상 노인의 62%가 할 수 있었고, 79세까지 노인의 65-70%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80세 이후부터는 크게 낮아져 21% 정도만 가능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원 손질, 캠핑, 사냥, 낚시, 수영, 달리기, 에어로빅, 자전거 타기, 테니스 등의 운동은 79세까지 90%의 노인이 한 가지 이상을 할 수 있었고, 85세까지도 61%나 가능했다.

Glass 등의 연구(1995)에 의하면 노화에 따라 일의 종류별로 참여빈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떨어지는 경우와 증가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 정신적 능력

생산적 노화와 관련한 심리적 노화의 측면은 노인의 정신적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간 뇌(腦)의 기억용량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보다는 사용 안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Birren, 1990). 언어능력으로서 어휘력도 노화와

더불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학 졸업 시 22,000단어 정도의 어휘력을 계속 개발하면 45,000단어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노화에 따라 지능이 저하한다는 것은 노인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지능검사 도구에 의한 측정결과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화와 지능저하의 상관관계는 횡단적 조사결과에 의한 동년배효과(cohort effect)를 종단적 조사의 결과처럼 무리하게 해석하여 주장되는 경우도 많다. 지능에 대한 한 종단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능은 70대 중반 이후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chaie & Labouvie-Vief, 1974). 그리고 지능의 개념을 결정화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 : 생후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지능 : 생활 훈련, 경험에 의한 것으로 언어성 지능 등)과 유동화지능(fluid intelligence : 생래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지능 : 추리능력 등)으로 나누면 유동화지능은 노화에 따라 저하되지만 결정화지능은 오히려 노화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Horn & Carttell, 1966).

인지적 능력의 저하는 사회적 및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발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에게 생산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여 노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Birren, 1990). 또한 창의력도 종사하는 직업과 수행하는 활동에 따라 노화에 따른 변화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3. 사회적 능력

생산적 노화와 관련한 사회적 능력의 중요한 일면을 직업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직업 수행능력은 신체근육운동, 인지 및 사회적 기술의 결합이라 할 수 있는데 노화에 따라 신체적 및 생리적 능력의 제한이 있어도 인지 및 사회적 기술을 활용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또한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능력을 특히 속도, 힘, 지구력의 평가나 조직기관의 기능평가로 단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Lindauer 등(1997)이 60대, 70대 및 80대의 graphic artist의 생산성을 측정한 결과 작품의 양과 질 모두에 있어서 고령층일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Oster 등(1998)이 경제학자들의 주요 학술지 제출논문 게재율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연령 증가가 게재율 하락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은 노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단편적 연구에 불과하다. 따라

서 노화에 따른 활동능력 또는 생산성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정교한 과학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후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보면 적어도 70대 중반까지는 노화에 따라 직업능력 또는 생산성이 별로 저하되지 않거나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친 평가로 노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주장하는 것은 편견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V. 생산적 노화 증진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 본 평균 기대수명과 기대여명 및 노화에 따른 능력의 변화에서 보았듯이 퇴직 이후의 노년기가 크게 연장되고 있고 그 연장된 노년기 동안의 건강기대수명도 연장되고 있는 만큼 무병 장수하는 정년 이후의 생애 또는 노년기에 생산적 노화의 삶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인 자신과 가족 및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생산적 노화의 생활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1. 노령기 연장에 대한 대책

노령기는 연령적으로 65세 이상의 시기로 정의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지만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여건 및 사회 법률적 여건에 따라 노령기 시작연령을 하향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나라 사기업(私企業)의 관행적 정년이 아직도 55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적 노령기는 퇴직하게 되는 55세부터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55세에서의 평균 기대여명은 1999년 현재 남자 21년 여자 27년이 되고 있다. 이러한 평균 기대여명은 20년 전에 비하여 남녀 각각 4년씩 연장되었다. 따라서 계속 연장되고 있는 20년 이상의 노년기를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대책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2. 건강유지의 수단

퇴직이 건강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도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퇴직 이후 생활에서 적절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약화를 예방하고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세 이상의 장수자 연구에 의하면 계속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장수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성재 외, 2001). 그리고 활동에의 참여는 적절한 심리적 자극과 정신적 긴장을 유지하게 하여 정신적 퇴화를 방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3. 생활만족도 증진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의하면 활동은 자아개념을 재확인하는 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하고, 역할지지는 긍정적 자아상을 유지시켜 주고, 긍정적 자아상은 생활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것이다(Lemon et al., 1972). 다시 말해서 활동참여 -> 역할지지 -> 긍정적 자아상 유지 -> 생활만족도 유지/향상으로 연계되므로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는 생활만족도를 유지/향상시켜 줄 수 있다.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에서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보다 조용히 있는 것이 오히려 생활만족도를 유지하거나 높인다는 대조적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아 노령기의 생활만족도 유지/향상을 위해 생산적 활동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자기성취의 기회 제공

Laslett(1989)은 인생의 단계를 (1)제1의 인생(의존, 사회화, 미성숙, 교육의 시기), (2)제2의 인생(독립, 성숙, 책임, 소득창출과 저축의 시기), (3)제3의 인생(자기 성취의 시기), (4)제4의 인생(최종적 의존, 노쇠와 사망의 시기)의 4단계로 구분하면서 제3의 인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자기성취의 시기는 의무적인데서 벗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의 시기로 볼 수 있다(Young and Schuller, 1991). 이러한 의미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자기성취의 활동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일단 노령기의 취업이나 재취업은 노령기 이전의 직업활동과는 다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Walker(1996)는 제3의 인생(the third age)을 퇴직 이후의 생산적 노화의 시기로 강조하고 있다. 제3의 인생의 의미와 그 중요성은 경험적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다 철학적이고 가치적 판단에 의한 주장이라 할 수 있지만 다른 이론적 주장과 연계해 보면 상당한 정도의 경험적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중년기 및 노년기 발달과업 성취

발달과업은 인생의 연속적 단계마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업을 말하며 Erickson(1963)에 의하면 어떤 발달단계에서의 과업의 미해결은 다가오는 다음 여러 단계에 축적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Erickson은 중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생성(generativity) 대 침체(stagnation)를 제시하고 있고, 노년기 발달과업으로 자아통합(ego integrity)과 절망(dispair)을 제시하고 있다. 생성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사회적 상황의 보호와 개선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성과 창의성을 포함하고 있다(Erikson, 1963). 다시 말해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일반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자신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년기의 발달과업은 노년까지 계속 성취될 수 있으며 실제로 55세 이후부터의 삶은 중년기의 상당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노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통합은 과거인생을 반추하여 인생을 바라던 대로 살았다고 받아들이고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여기고 앞으로의 죽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중년기 중반 또는 후반부터의 생산적 활동참여는 자신의 인생과정을 뒤돌아보고 다음세대와 사회일반을 위해 취업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나온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Havighurst(1972)도 중년기 발달과업의 하나로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제시하고 있고, 노년기에도 이러한 의무의 준수를 제시하고 있다. 생산적 노화의 활동은 바로 성인으로서 그리고 노인으로서 민주사회의 시민참여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6.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해소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negative stereotype 및 ageim)은 노동윤리와 생산 지향적 서구사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과 경제적 능력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사회가 노인에 대하여는 물론 노인자신들도 스스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는 경우도 많다. 사실 노인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이 훨씬 많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어도 70대 중반까지는 능력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정신능력이 떨어지고 직업활동 수행능력도 크게 떨어지고 의존적이고 따라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보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

생산적 노화의 생활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또는 고정관념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 노인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적 조직망의 다른 구성원들을 전체로 보고 그 전체와 공통적 의미를 나누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를 사회적 통합이라 할 수 있다(최성재, 1984).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적 조직망에로의 통합은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 심리적 욕구이다. 생산적 노화의 생활은 노인의 취업 활동, 시민참여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조직망에로의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8. 사회복지에의 기여

사회복지는 노인 및 노화과정과 관련하여 노인문제의 예방과 문제 해결에 대해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적 제도이다. 노인문제는 크게 경제적 문제, 건강보호 문제, 역할상실/여가문제로 대별한다면, 생산적 노화는 취업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고, 건강문제도 상당한 정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역할상실/여가문제도 상당히 해결하게 해 준다. 다시 말해서 생산적 노화의 생활은 노인문제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적 노화의 생활은 국가의 사회복지비용을 절약해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 복지비용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연금 급여비 증대 및 의료비의 증대이다. 현재 우리 나라 국민연금의 설계구조에 의하면 연금재정은 9%의 보험요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33년경이면 당해 연도 재정수지가 적자로 변하고, 2048년경이면 연금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재성, 2001).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5년마다 재정수지 계산을 시행하고 2013년부터 5년마다 연금 수급연령을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33년에 65세가 되도록 하도록 연금법이 개정되었다. 현재의 연금 수급연령은 60세여서 관행적인 퇴직연령인 55세에 퇴직하여 5년을 기다린 후에 수급할 수 있어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 불일치의 문제가 있다. 55세 이후 정년연장이나 재취업을 통해 연금 계속가입자가 되면 연금기금 형성에 기여하고 연금급여 시기도 연장되어 결국은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고 결국은 연금급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

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와 전체인구 평균 의료비 증가에 비하여 훨씬 급속하게 이루어져 왔고, 2001년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한 원인으로 노인의료비의 증가가 한 몫을 하고 있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 15년 사이에 노인인구는 2배정도 증가하고 전체인구 의료비는 약 20배 증가한데 비하여, 노인의료비는 76배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1985년 전체의료비 중 노인의료비는 4.7%이었으나 2000년에는 17.6%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볼 때 향후 노인의료비의 사회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산적 노화의 생활은 노인의료비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상당한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Ⅵ. 생산적 노화의 현황과 현행 정책

생산적 노화 활동은 앞에서 정의한대로 취업활동, 자원봉사활동과 학습활동으로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영역 활동의 현황과 현행 관련 정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취업 활동

1) 취업활동 현황

1990년대 10년간의 연도별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4>에서 보는 바와 같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세 이상 인구의 50% 정도이지만, 60세 이상에서는 40%를 전후한 정도이고, 65세 이상에서는 30% 전후의 정도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1999년 현재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수급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용자로 임금을 받고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전체의 37%이고 나머지는 고용주, 자영자 및 무급가족 노동자였다(<표 5> 참조). 피고용 노동의 경우 상용 피용자는 11%에 불과하고 고용상태가 불안한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대부분이었다.

<표 4> 연도별 연령층별 경제활동 참가 및 취업 인구 단위 : 천명 (%)

연도	55-59세(%)	60-64세(%)	5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1990	1,189 (74.8)	665 (57.5)	2,471 (50.0)	1,282 (38.2)	617 (28.1)
1991	1,273 (76.0)	688 (57.0)	2,624 (51.0)	1,351 (38.9)	663 (29.3)
1992	1,330 (76.0)	772 (60.9)	2,820 (52.6)	1,485 (41.1)	718 (30.6)
1993	1,307 (71.8)	762 (52.2)	2,798 (50.1)	1,491 (39.5)	729 (29.9)
1994	1,361 (72.3)	845 (60.2)	2,994 (51.4)	1,633 (41.4)	788 (31.0)
1995	1,354 (70.2)	914 (61.4)	3,094 (50.9)	1,736 (41.9)	822 (30.9)
1996	1,390 (70.4)	988 (62.8)	3,246 (51.3)	1,856 (41.8)	868 (31.3)
1997	1,488 (73.2)	1,041 (63.2)	3498 (53.2)	2,010 (44.1)	969 (33.3)
1998	1,439 (70.6)	1,056 (61.5)	3,387 (50.0)	1,948 (40.9)	892 (29.2)
1999	1,409 (69.5)	1,089 (61.2)	3,473 (50.0)	2,064 (41.4)	975 (30.4)

* ( ) 의 %는 해당 연령층 인구 중의 경제활동 참가인구의 백분율임
자료 : 통계청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5> 고령자의 임금별 고용형태 (단위 : 천명, %)

고용구분		전체	55-59세	60-64세	5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임금 취업	상용	6,050 (29.9)	238 (17.8)	104 (10.0)	374 (11.2)	136 (6.8)	32 (3.3)
	임시	4,183 (20.7)	212 (15.9)	161 (15.4)	461 (13.8)	249 (12.4)	88 (9.1)
	일용	2,289 (11.2)	178 (13.3)	127 (12.1)	411 (12.3)	233 (11.6)	106 (11.0)
	소계	12,522 (61.7)	627 (47.0)	393 (37.5)	1,246 (37.2)	618 (30.7)	227 (23.5)
비임금 취업	고용주	1,384 (6.8)	88 (6.6)	47 (4.5)	165 (4.9)	77 (3.8)	30 (3.1)
	자영자	4,457 (22.0)	442 (33.1)	443 (42.3)	1,417 (42.3)	975 (48.4)	532 (55.0)
	무급가족	1,918 (9.5)	179 (13.4)	165 (15.7)	522 (15.6)	343 (17.0)	178 (18.4)
	소계	7,759 (38.3)	709 (53.0)	655 (62.5)	2,104 (62.8)	1,395 (69.3)	740 (76.5)
총계		20,281 (100.0)	1,336 (100.0)	1,048 (100.0)	3,350 (100.0)	2,013 (100.0)	967 (100.0)

자료 : 통계청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피고용 상태의 노인과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수입을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수입을 전혀 얻지 못하는 노인은 무급 가족노동자로 55

세 이상 전체 고령자의 15%에 이르고 있다. 55세 이상 고령이 될수록 임금 취업자도 크게 줄어들어 65세 이상의 경우는 임금취업자는 24%에 불과하다.

고령자가 취업을 원하는 정도는 고용상태와 연령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인은 대부분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재 미취업 중인 노인인 60세 이상인 경우는 상당히 높은 편이나 65세 이상이 되면 10%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표 6> 연도별 60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 욕구

연 도	현 취업자 중 계속 취업 희망자 비율(%)	현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비율(%)
1981[1]	69.2	34.4
1988[2]	77.2	41.8
1990[3]	65.6	38.3
1994[4]	79.9	10.2
1998[5]	79.3	12.5

* 1994년과 1998년의 조사자료는 65세 이상에 대한 것임

자료 1)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2)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3) 總務廳長官官房老人對策室 (1991), 老人の生活と意識.
4) 이가옥 외 (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5) 정경희 외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취업노인으로서 계속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1998년의 전국표본조사(정경희 외, 1998) 결과를 분석한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을 얻기 위한 것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고(66%), 그 다음이 건강유지를 위한 것(7%), 일을 좋아하는 것(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65세 이상 취업노인의 취업 계속 사유

취업 계속 사유	전체	성별		연령		
		남	여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일이 좋아서	8.2	11.4	5.0	7.1	9.9	9.1
돈이 필요해서	66.1	62.7	69.5	70.9	60.7	60.3
건강유지를 위해	7.2	9.5	4.9	6.1	10.3	5.7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0.7	1.1	0.4	1.4	0.0	0.0
시간을 보내기 위해	5.9	4.1	7.7	3.9	6.1	11.4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	4.2	6.5	1.9	4.8	4.8	1.7
사회적 지위 명예를 위해	0.2	0.4	0.0	0.3	0.0	0.0
일손이 모자라서	6.9	3.9	9.8	5.6	7.6	9.4
기타	0.6	0.4	0.9	0.0	0.6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정경희 외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그리고 미취업자로서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가장 많고 (50%),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20%), 일자리가 없는 것(14%) 순으로 많았다.

<표 8> 65세 이상 비취업 노인의 비취업 사유

비취업 사유	전체	성별		연령별		
		남	여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	20.2	19.5	20.5	16.0	19.6	24.7
일할 필요가 없어서	5.5	4.7	5.9	4.7	6.4	5.5
일자리가 없어서	14.0	24.9	9.1	21.0	13.4	7.9
건강이 좋지 않아서	44.9	39.3	47.4	45.3	48.6	41.2
가사일 때문에	4.7	0.7	6.5	8.2	4.2	1.6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1.1	1.3	1.1	0.8	1.2	1.3
연로해서	9.5	9.4	9.5	3.7	6.3	17.7
기타	0.2	0.3	0.1	0.3	0.2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정경희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고령자 재취업률은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고령자인재은행과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 프로그램의 취업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노인 재취업률을 알 수 있다. 고령자인재은행을 통하여 재취업한 통계를 보면 구인배율(구인/구직)은 1이상이지만 취업률은 100%에 못 미치고 있다

(<표 17-10> 참조). 그러나 고령자의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55세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인배율이 낮아지고 취업률도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9> 고령자 인재은행 연도별 취업알선 현황

연도	구직	구인	구인배율	알선	취업	취업률
1993	8,640	12,238	1.42	7,920	6,689	77.5
1994	13,898	16,773	1.21	14,062	12,883	76.8
1995	15,831	18,662	1.08	16,828	15,832	100.0
1996	17,321	19,361	1.12	18,914	17,102	98.7
1997	21,229	23,104	1.09	24,371	20,407	96.1
1998	16,204	26,195	1.62	21,072	16,104	99.4

자료 : 노동부(1999), 노동백서.

2) 현행 취업 및 재취업 정책

현재 고령자 취업 및 재취업 프로그램은 주로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에 의거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인의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 혼선과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령자는 55세의 자로 되어있는 반면에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은 65세 이상의 자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취업관련 정책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을 다루는 경우보다는 실제로 55세 이상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현재 고령자 고용증진 프로그램은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이 두 법에 의한 프로그램 이외에 고용보험법, 및 기타 정부부서 자체의 규정에 의한 노인고용 증진 프로그램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취업알선센터 프로그램이다. 정부로부터 무료직업소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및 공인단체 중에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5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지도와 취업알선 업무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98년 현재 36개 고령자 인재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실적은 앞의 <표 9>와 같다.

(2)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여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위해 지역별로 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이 시행된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다.

(3) 고급인력정보센터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고용알선 프로그램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 경험을 축적하고 퇴직하는 고급 인력 및 중견인력의 분야별 고급인력 pool을 형성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1996년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4)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3가지 종류의 장려금이 있다.

①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 : 고령자 6%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초과 고령자 1인당 연간 최고 36만원 지급하는 것이다.

②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 : 한 분기동안 고령자를 5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신규고용 고령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4을 6개월간 지급해 주는 것이다.

③ 고령자 재고용 장려금 : 이 프로그램은 퇴직한 중고령자(45세 이상)를 2년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1회 지급하는 것이다.

(5) 고령자 및 준고령자 적합직종 선정 및 우선 채용 권고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45세 이상)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여 국가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에 이들 직종에 해당하는 인력은 준고령자 및 고령자로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는 것이다. 2000년 10월 현재까지 선정된 고령자 적합직종은 77개 직종이다. 고령자 적합직종은 선정시기가 최근일수록 상당히 다양하고 고급수준의 전문·기술직종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양성은 상당히 뒤지고 있다. 직종의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직종에 고령자를 채용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6) 고령자 직업능력 배양

이 프로그램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고령자 적합직종을 중심으로 직업생활의 기본 소양,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요령, 직종별 작업수행능력 훈련을 1-4주간씩 시행하여 취업준비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7) 정년연장 지도 및 재고용 및 계속고용 장려

이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지도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현저히 낮은 경우 사업주에게 정년연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고령자의 근무연장을 위해 퇴직전 임금수준의 일정비율로 임금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것이다.

(8) 노인생업지원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신문,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65세 이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 규정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9) 노인취업알선센터

이 프로그램은 1981년부터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실행되어 오던 노인능력은행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현재 대한노인회의 시·도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현재 전국에 70개소가 있다.

(10) 노인공동작업장

이 프로그램은 1986년부터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이며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작업장을 설치하여 생산업체의 제품생산 작업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여 여가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지원과 생산업체와의 연계가 어려워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2. 자원봉사 활동

1) 자원봉사활동의 현황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에 대한 통계는 조사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의 범위(60세 이상, 65세 이상 등)와 표본의 범위(일부지역 또는 전국 표본) 등에 따라 다르고 참여정도의 응답범주도 각각 달라 비교하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 연령별로 자원봉사 참여현황을 볼 수 있는 조사가 없어 최근의 현황을 알기 어렵다.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사에서 나타난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주 1-2회 정도 참여하는 정도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대체로 10%정도 또는 그 이하라 할 수 있다.

<표 10>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현황조사

여가활동 종류	전혀 안 함	3-4개월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계
일본정부조사(60세 이상)1)	61.1	12.7	13.6	12.6		100.0
서울시 조사(65세 이상)2)	83.5	16.5				
김익기 외 조사(60세이상)3)	93.3	2.2	2.2	1.6	0.7	100.0

자료 : 1) 日本 總務廳長官官房高齡化社會對策室(1997), 高齡者の生活と意識 : 第4回國際比較調 査結果報告書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7), 서울시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3) 김익기 외(1999), 한국노인의 삶 : 진단과 전망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65세 이상 노인이 가족, 이웃 돌보기 지역사회 참여, 자원봉사 등에 보내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조사한 것을 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이 표는 1999년 생활시간 조사(통계청, 2000)결과를 인용한 것인데 가족 보살피기와 참여 및 봉사활동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영역에서의 구체적 활동의 시간이 표시되어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가족 보살피기에 24시간 중 평균 15분을, 참여 및 봉사에 평균 4분을 사용하고 있고, 두 영역의 활동 모두에 평균 19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65세 이상 노인의 24시간 생활시간 사용 현황 (단위 : 시간 : 분)

생활 행동	남	여	전체
가족 보살피기	0 : 12	0 : 18	0 : 15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0 : 08	0 : 10	0 : 09
초 중고등생 보살피기	0 : 00	0 : 03	0 : 02
배우자 보살피기	0 : 02	0 : 02	0 : 02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 : 00	0 : 01	0 : 00
그 외 가족 돌보기	0 : 01	0 : 02	0 : 02
참여 및 봉사활동	0 : 04	0 : 05	0 : 04
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 돕기	0 : 01	0 : 04	0 : 03
지역공동체 활동	0 : 01	0 : 01	0 : 01
사회참여 활동	0 : 00	0 : 00	0 : 00
자원봉사	0 : 01	0 : 00	0 : 01
총계	0 : 16	0 : 23	0 : 19

자료 : 통계청(2000), 생활시간조사 결과

2) 자원봉사활동 지원 프로그램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은 없고 정부지원의 노인복지회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자원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복지관 외에 일반사회복지관, 노인복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 : CSC)이 있지만 확실한 통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중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간접적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복지(회)관과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이 있을 뿐이다.

(1) **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등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회관은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히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건립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과 혼돈 되어 매우 애매 모호한 위치에 있다. 정부의 공식적 통계로는 2000년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하여 100여 개 이상의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양하고 상당히 조직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어 노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2)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 50세 이상의 퇴직노인들의 경험을 활용한 경제·사회활동 참여확대를 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증진하고 생산적 노화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종 및 봉사영역을 적극 개발하고,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을 가진 노인을 수요처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단위(시·도 또는 시·군·구)로 Community Senior Club(CSC)을 구성하여 노인과 고령층 대상의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형태로 운영하되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노인들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CSC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자활수익사업(청정유기농작물 재배·판매, 유기농작물을 재배, 간이 판매업 등), 자원봉사 활동, 전문상담사업, 가사지원 서비스(아동 및 환자 돌보기, 간병인, 홈헬퍼, 시간제 도우미 등), 지역사회 수요에 따른 각종 교육 및 사업 자문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종교단체, 일반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적절한 시행단체를 선정하여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CSC는 취업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혼합한 생산적 노화 생활 추진정책이라 할 수 있다.

3. 학습 활동

1) 노인 학습활동 현황

학습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율도 대단히 낮은 편이다. 한 조사(김익기 외, 1999)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들의 학습활동 참여율은 약 7%정도에 그치고 있다. 주 1-2회 이상 학습활동에 참석하는 노인은 3.7%에 불과하였다. 현재 노인 학습활동은 지역사회 노인교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일반사회단체의 평생교육원, 기업체 및 사회단체에서 시행하는 퇴직 전 사회적응 훈련, 직업훈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장미란, 2000).

(1) **지역사회 노인교실** : 노인들의 학습활동이 거의 노인학교 출석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노인학교에 참여하는 노인은 65세 이상 조사대상 노인의 1%에 불과하였다(정경희 외, 1998). 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노인교실의 수는 2001년 현재 583개소이며 956,660명이 수강하고 있다.

(2)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일부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2000년 8월 현재 평생교육원 중에 노인교육과정이 설치된 곳은 40개소가 되었다.

(3) **일반사회단체** : YMCA/YWCA, 여성단체, 시민단체,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노인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기업 및 사회단체의 퇴직준비/사회적응 훈련** : 기업 및 사회단체에서 퇴직 전에 퇴직생활 준비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퇴직 후 사회적응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 및 사회단체의 퇴직준비교육은 1985년경부터 시작되어 상당 수의 대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연수원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나 크게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

(5) **직업훈련**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령자 직업적응훈련,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 및 창업 훈련 등이 있다.

2) 노인 학습활동 지원 정책 프로그램

위에서 몇 가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식적 노인 학습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노인교실 하나 뿐이라 할 수 있다.

1972년 서울평생교육원이 우리 나라 최초의 노인학교로서 설립된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노인교실 설립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여(정지웅 · 김동일, 1984) 2001년 현재 전국에 1,000개 이상의 노인교실이 설립되어 있고 이중 583개만이 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다. 노인교실은 ① 대한노인회, ② 대학(교) ③ 사회단체, ④ 종교단체, ⑤ 사회복지법인, ⑥ 개인 등이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학교는 대체적으로 교양교육과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겸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질이 높은 시설이 있는가 하면 낮은 시설도 상당히 있다. 대한노인회, 대학 등의 프로그램은 상당히 질이 높고 다양한 편이고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교육시간이 충분치 못하고 따라서 제한범위내의 교양교육이 위주가 되어 있으며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적은 편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학교는 프로그램의 양과 질에 있어서 상당히 낮고 노인의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1997년 노인교실 실태조사(모선희, 1997)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노인교실에서 주로 강의하는 교양과정의 내용은 <표 12>과 같다.

<표 12> 노인교실의 주요 강의내용

강의 내용	제공하는 노인교실 비율(%)
건강관리/의학상식과 관련된 문제	71.8
노인복지와 관련된 문제	29.7
노인의 자세와 역할에 관한 문제	64.1
윤리/도덕/예의범절에 관련된 문제	20.3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	26.6
여가활동의 방법과 요령에 관한 문제	25.0
시사 문제	17.2
영어/일어/한글 등 어학 교육	3.1
종교 학습	4.1
관혼상제 관련 문제	1.6

자료 : 모선희 (1997), 노인교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 경로당 노인교실의 현황과 과제(한국노인 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 제2권 4호), p. 95.

이러한 노인학교 시설은 노인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외에 사회화의 수단으로 새로운 노인문화를 형성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방법을 개발하는 데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노인교육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난제들을 안고 있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정지웅・김동일, 1984 : 모선희, 1997).

① 노인학교의 운영자들이 노인교육 및 노인학교운영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②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③ 교육시설이 미비하고 교육내용이 노인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④ 교재 및 교육방법 등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⑤ 운영재원이 부족하고 노인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다.

Ⅶ. 생산적 노화를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

1. 생산적 복지의 정책 방향 설정

생산적 노화는 노인 자신, 지역사회 및 국가에 크게 이익이 되므로 생산적 노화를 주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서에 의하면 노인복지 정책방향의 하나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패턴 정립'을 제시하면서 정책 프로그램으로 'CSC 등을 통한 경제·사회활동 참여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복지부 노인 보건복지 안내서의 정책 방향은 생산적 노화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범위가 좁고 분명하지 못하다. 따라서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패턴 정립' 대신에 '생산적 노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적 노화는 현재까지의 저소득층 중심과 시설중심의 노인복지 정책에서 중산층까지의 노인계층을 포괄하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목표는 대안적인 것을 택할 수 있지만 '생산적 노화'는 선진국의 복지국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잘 반영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2.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의 개선 및 제안

1) 취업 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1) 정년 연장

① 노인고용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민간사업체)에 대하여 일율정년제(연령중심의 정년제)를 확립하고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정년을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60세까지 연장할 것 : 정년연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기업 측의 준비를 위하여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60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능력급 보수체계로의 개선

가. 보수체계를 능력급으로 과감히 전환할 것 :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보수체계를 연공가급제에서 능력급으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나. 55세 이후 연공가급분의 보수가산 중단 : 55세 이후는 연공가급분에 의한 보수가산은 중단하고 능력급에 의해서만 가산해야 할 것이다.

다. 55세까지의 보수를 60세까지의 보수와 같게 보수증가율 조정할 필요가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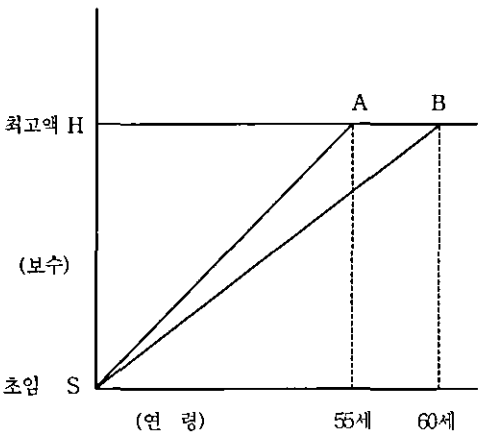

- 초임=S
- 최고임금=H
- 초임에서 55세까지의 임금 증가율 곡선=AS
- 초임에서 60세까지의 임금 증가율 곡선=BS라 하면

*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 50세에 최고임금이 되던 것을 60세에 최고임금이 되게 하여 임금증가율 곡선 AS보다 BS를 완만하게 됨

<그림 1> 보수 증가율 조정방안

④ 정년 연장단체에 대한 보조금제도 시행 : 임금보조 또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정년연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일본에서는 1973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예가 있음).

⑤ 노화와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해 정년연장의 타당성을 설득할 것 : 직종별 연령별 생산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실험적 연구 포함)와 고령노동자의 고용의 장단점 등을 연구한 결과에 의해 정년연장을 설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학적 근거 없이 고령자를 강제적으로 고용하게 하면 직장에서 고령노동자는 '소용은 별로 없지만 할 수 없이 고용된 사람' 아니면 '시혜 대상자'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있음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무연장/재고용

① 정년 후 근무연장 또는 재고용 유도 : 정부는 단순한 유도보다는 인센티브(예를 들

면 세제감면 등)를 제공하고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현행고용보험법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적극 이용 :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 규정 및 노동부령에 의하여 55세 이상 고령자 일정률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정년 후 재고용/근무연장에 대한 다양한 고용조건 적용 유도 : 정년 후 재고용 조건의 다양한 형태(임금율을 낮춤, 현행 임금체계를 유지하되 퇴직금 지급은 중단, 임금과 퇴직금 없이 수당만 지급, 파트타임 등)를 연구하여 단체의 사정과 개인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중소기업 측에 대한 이러한 적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령자 재취업 증진

① 고령자고용촉진법 규정의 강제화 :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고령자 취업을 단순히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대단히 제한적이므로 법규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강제적용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고용장려기금에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식으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취업알선기관의 일원화 및 증대 : 고령자취업알선기관으로는 고령자인재은행(고령자고용촉진법 기관)이 전국에 36개소,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전국에 70개소가 있는데 노인취업알선은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도 중앙정부기관과 연계하고 그 수를 대폭 증대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령자인재은행은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③ 고령자고용 장려금 지급 : 고용보험법 규정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위 근무연장/재고용 부분 설명 참조).

④ 고령자고용 서비스 기관간의 상호연계 및 지역적 안배 필요 : 향후의 정보화 사회 추진정책(예를 들면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추진 등)에 따라 공공 및 민간의 취업알선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정보의 체계화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⑤ 노인에게 적합한 작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민간기업체의 협조 유도 : 특히 복지부 지원의 노인공동작업장의 일거리 수주를 위해서도 민간기업체가 노인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노인들에게 맡겨서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

로 적극 홍보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⑥ 고령자고용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일원화 및 확충 :

가. 현재 고령자고용관계 업무를 국가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취급하고 있는데 고령자고용관계 업무는 전반적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동부에의 일원화가 어려우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현재 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과에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업무를 적어도 장애인 고용과 내 1개 계(전담 사무관 및 직원)에서 전담하도록 확충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고령자고용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노인 적합 직종 개발 및 보급

① 다양한 노인 적합 직종의 개발과 보급 : 현재 정부에서 선정한 87개 직종은 아직도 수적인 면에서 적고 단순노무직에 치우쳐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보다 폭 넓은 전문기술직을 포함하고 또한 55-59세 보다도 60세 이상의 자들에게도 적합한 다양한 업종에 대하여 계속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직종별 노화와 생산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필요 : 노인직종 개발은 단순한 의견조사나 비체계적 경험에 의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과학적인 실험연구를 통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인고용제도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직종개발이 필수적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5) 직업능력 배양 훈련

① 퇴직 전 직업훈련 지원 : 사업주 측에서는 정년퇴직 전에 일정기간 동안 사내에서나 외부시설에 의뢰하여 새로운 직종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현행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36-37조의 적극 시행 및 활용이 가능하고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토록 유도, 예를 들면 포항제철에서는 퇴직 1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음).

② 사업주 측에서 퇴직 전 정년퇴직 준비교육 실시 및 강화 : 늦어도 퇴직 2-3년 전부터 퇴직예정자가 퇴직후의 생활설계를 하도록 도와주고 재취업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내의 몇몇 단체에서 실시하는 퇴직준비교육은 퇴직 2-6개월 이내에 하고 있어 재고용에 대한 계획수립에 효과가 대단히 미약하다고 하겠다.

③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총괄기관(가칭 노령자고용촉진공단) 설립 필요 :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자가 재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같은 기관이 있는데 노인재취업을 위한 비슷한 기관은 없다. 따라서 노인의 취업 및 재취업 증진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공단 또는 노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을 위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거나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이 기관의 기능과 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국가 전체의 인력수급차원에서의 고령자고용 촉진

① 업종별 인력부족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노인 고용 촉진 : 과거 및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인력난(특히 3D업종)에 대처하기 위하여, 또한 임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령자를 일반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비제조업 분야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인력보충에 노인 활용 : (1) 노인이 무임금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야도 대단히 많고, (2) 노인 적합 직종은 반드시 제조업만이 아니라 비제조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도 폭넓게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국가의 인력수요를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7) 노인 재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

① 노인고용의 직장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를 홍보하여 사회적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② 노인고용은 사업주가 민간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2) 자원봉사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1)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 기관 자체의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조직화 :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정, 노인회관, 노인대학 등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크게 필요하지만 현 여건 하에서는 그러한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므로 지역사회의 노인층, 지도급인사, 많은 여성 자원봉사자 및 종교기관 특히 교회 등이 참여하여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오늘의 젊은이는 내일의 노인이 된다. 이러한 노인복지를 위한 관심과 참여는 바로 지역사회주민 전체의 일인 것이다.

(2) 지역사회 내의 노인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의 네트워킹 :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및 사회단체 등은 노인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연계하여 노인자원봉사자 자원을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을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전국적 네트워킹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여러 가지의 일반자원봉사자 관리 전산프로그램이 있으나 상호 네트워킹이 되지 않아 지역사회내의 자원봉사자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3) 정부의 노인자원봉사자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 :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노인들이 자원봉사 조직을 만들고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이러한 일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힘들면 몇몇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면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사실 노인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모집하며 훈련하고 배치하고 관리하는 등의 과정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는 것도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라 할 수 있다.

(4) 자원봉사 진흥법(가칭) 제정 추진 : 노인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비노인층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경우와 공통되는 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국민의 자원봉사 활동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진흥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훈련, 자원봉사자 구인처 개발, 관리 등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의 위험에 대한 보장 등도 규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노인 교육 증진을 위한 정책

(1) 노인교육 관할 정부 부서의 확정 :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교실은 노인여가 시설로 되어 있다. 과거 한 때는 노인교실이 사회교육법에 규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하에 있던 적이 있다. 노인교실을 하나의 여가증진 복지프로그램으로 볼 수도 있으나 평생교육이나 성인교육으로 본다면 교육적 의미가 크다.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노인교실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노인교실을 평생교육 또는 성인교육으로 보고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관할부서도 교육인적자원부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간 이기주의 내지는 부처에 서로 피하는 정책 프로그램이 된다면 총리실에 일본처럼 고령화사회대책실을 설치하여(교육을 위서만 아니라 노인복지의 장기적 종합정책 수립과 조정 및 시행을 위해

서 필요함) 총리실에서 직접 다루거나 총리실에서 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잘 조정하여 정책이 노인교육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노인교육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 현재 노인교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교육교재가 전무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물론 관할부서의 혼선과 정책의지 결여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우선 현재의 복지부 관할에서도 약간의 예산을 배정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면 노인교실 교육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3)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확대 : 현재 일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평생교육원에서 노인들이 학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대학의 동창생 및 학생의 부모 및 조부에게 평생교육원의 일정비율을 배정하거나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대학교로서 좋은 서비스가 되고 홍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4) 방송 노인대학 프로그램 지원 : 공중파 라디오 및TV 채널을 통하여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많은 대상에게 효과적인 노인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우선 교육방송국(EBS)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인교육 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강의 교재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퇴직준비 교육 및 퇴직 후 교육 프로그램 실시 지원 : 기업체, 사회단체 및 정부기관에서도 퇴직예정자에 대해 2-3년 전부터 늦어도 1년 전부터라도 퇴직준비교육(일반적 교육과 전직훈련 등)을 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퇴직 후에도 퇴직자를 모아 퇴직 후 적응 내지는 전직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각 단체나 기관마다 자체적 시행이 어려우면 일정기관(예 :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여러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Ⅷ. 결론

우리 나라는 노인문제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시행착오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나라는 그러한 교훈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예방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실로 유리한 역사적 발전단계에 있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이

점을 살려 생산적 노화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많은 노인문제가 예방되고 복지비용도 절약되고 많은 노인이 더욱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제시한 정책 방향과 정책 제안은 정부의 한 부서의 소관이라기 보다는 전 부처가 서로 협조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부처의 노인복지 정책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실천의 감독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일본처럼 고령화사회대책실을 만들고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청와대 노인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도록 하여 생산적 복지의 정책 추진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제기한 정책을 정부에서 채택하는 문제는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최고정책 결정자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므로 생산적 노화도 결국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것이고 그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김익기 외(1999). 한국노인의 삶 : 진단과 전망. 서울 : 미래인력연구센터.

노동부(1999). 노동백서. 과천 : 노동부

모선희(1997). 노인교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편, 경로당 노인교실 현황과 과제 (PP. 79-136). 서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민재성 (2001). 21세기 연금문제와 정책과제. 연금포럼, 4, 9-18.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7), 서울시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서울 : 서울시 정개발연구소.

이가옥 외 (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미란(2000). 성인학습상황에서의 노인교육. 박재간 외 편, 고령화사회와 노인교육의 실천방안(pp. 195-224). 서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정경희 외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지웅 · 김동일(1984). 노인교육의 현황과 욕구. 한국유네스코 위원회 편, 노인문제와 노인교육(pp. 167-208). 서울 :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최성재(1984). Modern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Aged into the Family in Korea. Ph. D.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최성재 외 (2001). 장수의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및 문화적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 일본, 핀란드 백세인에 대한 조사연구(서울대학교 학제간협력연구보고서).

통계청(1999). 경제활동인구연보. 대전 : 통계청.

통계청(2000) 1999년 생명표 작성결과. 대전 : 통계청.

통계청(2000) 생활시간조사. 대전 : 통계청.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대전 : 통계청.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總務廳長官官房老人對策室 (1991), 老人の生活と意識 : 第3回國際比較調査研究報告書 동경 : 總務廳長官官房老人對策室.

總務廳長官官房高齡化社會對策室(1997), 高齡者の生活と意識 : 第4回國際比較調査結果報告書. 동경 : 總務廳長官官房高齡化社會對策室

Birren, J. E. & Permutter, M. A. (1990). Measuring Our Psychological Performance. In R. N. Buttler et al. (Eds.)., The Promise of Productive

Aging : From Biology to Social Policy.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

Burr, J. A. et al. (2002). Productive Aging and Civic Participation. Journal of Aging Studues, 16, 87-108.

Buttler, R. N. et al. (Eds.) (1990). The Promise of Productive Aging : From Biology to Social Policy.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 W.W. Norton & Co.

Glass, T. A. et al. (1995). Change in Productive Activity in Late Adulthood :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0B(2), S65-S76.

Gulnick, J. M. (1985). Determinants of Functional Health Status in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Habib, J. (1990). Population Aging and Economy. In R. H. Binstock & L. K.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3rd. ed.). (pp. 328-345). Thousand Oaks, CA : Academic Press.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 David McKay.

Hendrick, J. (1995). Productivity. In G. L. Maddox et al. (Eds.), The Encyclopedia of Aging (2nd ed.) (pp. 764-765).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

Hooyman, N. & Kiyak, H. A. (1999). Social Gerontology :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5th ed.). Boston : Allyn and Bacon.

Horn, J. L. & Cattell, R. B. (1966). Retirement and Test of Theory of Fluid and Crystallized Intelligence.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2(2), 253-270.

Laslett, P. A. (1989). Fresh Map of Life. London : Weidenfeld and Nicolson.
Libass, F. P. (1990). The Benefit of Extending the Work Life. In R. N. Buttler et al. (Eds.), The Promise of Productive Aging : From Biology to Social Policy.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
Lindauer, M. S. et al. (1997). Aging Artists on the Creativity of Their Old Age. Creative Research Journal, 10(2-3), 1334-152.
Oster, S. M. & Hamermesh, D. S. (1998). Aging and Productivity among Economists.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1, 154-156.
Starrels, M. E. (1994). Life Course : Stages and Institutions : In S. A. Bass et al. (eds.),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iety (book review). Contemporary Sociology, 23(3), 408-410.
Young, M. & Schuller, T. (1991). Life after Work : The Arrival of the Ageless Society. London : HarperCollins Publishers.
Lemon, et al. (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 511-523.
Schaie, K. W. and Lavouvie-Vief, G (1974). Generational Vs. Ontogenetic Components of Change in Adult Cognitive Behavior : A Fourteen-Year Cross Sequenti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10(3), 309-315.
United Nations. (1993, 2000).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New York : United Nations.
일본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0). 인구통계자료집. 동경 :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Walker, J. (Ed.) (1996). Changing Concepts of Retirement. Brookfield, Vermont : Ashgate Publishing Co.